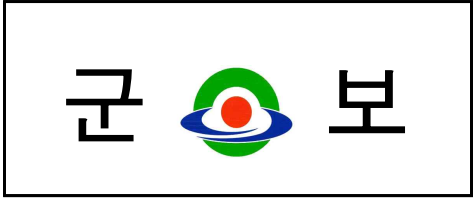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86호 2026. 2.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군 풍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4호)

공 고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12호)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13호)
-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31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풍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12.

예 천 군



1. 사업의 명칭: 예천군 풍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풍양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족시설 마련과 지속적 운영관리 역량 및 기틀 마련

3. 사 업 비: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 군비 920)

4.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건강마루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 등

5. 사업자 : 예천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2027년(5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입		
1	낙상리	202-5	주차장	852	852	예천군	
2	낙상리	72-1	잡종지	1282	1282	예천군	
3	낙상리	72-15	잡종지	45	45	예천군	

8.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농촌개발팀 ☎054-650-7325) 비치된 기본계획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 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점 용 자 주 소	(주)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 : 김원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5-9)
위 치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842-10, 842-11번지
점용면적	2,02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사업개요	드라마촬영장
점용기간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2월 14일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이장 임명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신설하여 이장 임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 임명자격 기준 정비(안 제2조)

- 이장의 임명자격으로 해당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

나. 이장 지원서 서식 정비 및 신설(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서식)

- 지원서 서식 상 임명자격 기준 정비 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추가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jh2920@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재임 중인 이장이 임기만료로 연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읍·면 ○○리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안)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거 ○○읍·면 ○○리 이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1. 모집대상 : ○○읍·면 ○○리
2. 임명(위촉)기간 :
3. 지원자격 : 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4. 신청기간 : 20 . . . 09:00 ~ 20 . . . 18:00까지(10일간)
5. 구비서류
 - 가. 이장지원서
 - 나. 주민등록초본
 - 다. 주민추천서 및 회의록
 - 라.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지원서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문의 및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054-000-0000, FAX 054-000-0000)

이장 지원서

성명(한자)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전 입 일			직 업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자원봉사 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 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기 간		자격 및 주요경력		근 무 처		

본인은「예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_____읍·
면 _____리의 이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_____읍·면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초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4.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예천군 이장 지원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천군에서는 이장 임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예 ☐ 아니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 전입일, 직업, 최종학력 및 주요 경력, 자원봉사활동실적, 각종 수상내역	이장 선정 심사	<u>이장 선거 종료시까지</u>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정홍보, 행사안내	<u>이장 임기 종료시까지</u>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근거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수당지급, 보험가입	<u>이장 임기 종료시까지</u>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기관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공개모집 또는 계약 절차를 통해 선정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u>이장 임기 종료시까지</u>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예천군수(○○읍·면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 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 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임명자격) ① ----- <u>각호</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에 따른 월정수당 및 통신요금 등 실비 일할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 직무대행자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 이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월정수당 및 통신요금 일할 지급 근거 마련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h29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조례 제 호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직무수행 시 월정수당 및 통신요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조(실비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직무수행 시 월정수당 및 통신요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환경 조성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수사·민사 소송별 선임 비용 지원 기준 마련

-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은 경우 : 200만원 이하

-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나. 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적극행정 지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상정·심의 절차와 14일 이내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결정 사항의 통보 체계 마련

다. 선임비용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 거짓·부정한 신청, 의무 사항 미이행 등 지원 취소 사유에 따른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4. 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방문 제출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팩스 : 054-650-6059
- 전자우편 : chltlnals15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천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예천

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예천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거나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징계 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